

## 제 4 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

### 제 4.1 조 공표

1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,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, 인터넷상을 포함하여, 공표한다.
2.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, 그러한 문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.
3. 가능한 한도에서,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,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
### 제 4.2 조 상품의 반출

1.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2. 제 1 항에 따라,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.
  - 가.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,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 시간 이내에,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
  - 나. 상품이 도착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
  - 다.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, 그리고
  - 라. 적용 가능한 관세,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 관세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,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,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<sup>1</sup>

### 제 4.3 조

---

<sup>1</sup>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자국 관세당국이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관세, 조세 및 수수료의 지급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담보,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 자동화

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,

- 가. 가능한 한도에서 세관 이용자가 전자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.
- 나.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.
- 다. 국제무역 데이터의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, 다른 쪽 당사국의 시스템과 호환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. 그리고
- 라.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.

## 제 4.4 조 위험관리

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당국이 검사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 또는 유지하도록 노력한다.

## 제 4.5 조 협력

1. 이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정책의 중요한 수정이나 수입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진행사항에 대한 사전통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2. 당사국들은 다음에 관한 당사국들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는 데 협력한다.
  - 가. 특혜관세대우의 신청, 특혜관세대우 신청절차 및 검증절차를 포함하여,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 및 운영
  - 나. 이 협정에 따라 수입된 상품의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품목분류,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, 그리고
  - 다.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세 사안

## 제 4.6 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

1. 당사국들은 세계관세기구의 무역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표준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프로그램의 이행을 증진한다.
2. 그 요건을 준수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뿐만 아니라, 그 프로그램의 의무, 요건,

형식은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수립된다.

3. 당사국들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프로그램의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교섭을 증진한다.

#### **제 4.7 조 비밀유지**

1. 이 장 및 제 3 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.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다른 쪽 당사국이 정보 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.

2. 당사국이 제 1 항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도, 그 정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.

3.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 1 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당사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.

4. 각 당사국은 공개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관세법 행정에 따라 제출된 비밀 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
#### **제 4.8 조 특송화물**

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 이러한 절차는

- 가.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규정한다.
- 나.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.
- 다.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,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.
- 라. 가능한 한도에서,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.
- 마.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, 화물이 도착한 경우, 필요한 통관서류가 제출된 후 6 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이 통관되도록 규정한다.
- 바. 특송화물의 중량에 관계없이 적용된다. 그리고

- 사.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, 미화 150 달러 이하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. 공식적인 반입서류는 각 당사국<sup>2</sup>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간소화된다.

#### **제 4.9 조 재심 및 불복청구**

1.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,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가. 그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, 그리고

나.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

2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그 당사국이 제 4.7 조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
#### **제 4.10 조 벌칙**

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품목분류, 관세평가, 원산지국가 및 특혜관세 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것을 포함한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,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
#### **제 4.11 조 사전심사**

1. 각 당사국은,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<sup>3</sup>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,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하여 서면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.

가. 품목분류

나.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

다. 상품이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, 그리고

---

<sup>2</sup> 사호에도 불구하고,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화물 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수입제한 상품의 경우, 당사국은 공식적인 반입서류, 관세 또는 조세를 요구할 수 있다.

<sup>3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수입자,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.

라.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

2.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후 120 일 또는 당사국이 자국의 법규에 정한 그보다 짧은 기간 이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. 다만, 신청인은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. 사전심사서를 발급할 때, 그 당사국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한다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당사국은 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서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.
3. 각 당사국은 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, 사전심사서가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서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서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.
4. 발급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 발급 당사국은, 심사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 한해서만 심사 결과를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
5. 자국 법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,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 결과를, 인터넷상을 포함하여, 공표할 수 있다.
6. 신청인이 사전심사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을 누락하는 경우 또는 사전심사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, 수입 당사국은 민사, 형사 및 행정적 조치, 금전상의 벌칙 또는 그 밖의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## 제 4.12 조

#####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 지원

1. 당사국들의 관세당국은 특히 관세 법규 위반행위의 방지, 조사 및 대응을 통하여 그 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권한 및 역량 내에서 상호 지원한다.
2. 지원 요청을 받은 당국은 그 권한 및 자원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.

#### 제 4.13 조

#####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와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

1.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대표<sup>4</sup>로 구성된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와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 위원회는 원산지 규정, 원산지 절차, 무역원활화 및 관세 사안을 다루는 일을 담당한다.

---

<sup>4</sup> 한국의 경우, 대표는 한국의 관세당국이 될 것이다.

2. 위원회는 이 장 및 제 3 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한다.
3.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.
  - 가. 이 장 및 제 3 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효과적이고, 통일되며, 일관된 운영 보장
  - 나.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의 변경에 기초한 부속서 3-가(품목별 원산지 규정)의 개정
  - 다. 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안된 해결 방안 권고
    - 1) 부속서 3-가(품목별 원산지 규정)를 포함한 이 장 및 제 3 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해석, 적용 및 운영
    - 2)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, 그리고
    - 3) 당사국들 간 교역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, 이 장 또는 제 3 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운영 관행을 한쪽 당사국이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
  - 라. 국제 표준에 따라 당사국들 간 상업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통관 관행 및 표준 채택
  - 마. 당사국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, 부속서 3-가(품목별 원산지 규정)를 포함한 이 장 및 제 3 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수정에 대한 제안을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
  - 바. 전자 증명 및 검증 시스템 개발 작업
  - 사. 이 협정에 관한 통관 사안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<sup>5</sup>, 그리고
  - 아. 공동위원회가 부여하거나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 수행
4. 위원회는 이 장 및 제 3 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에 수립된 메커니즘의 공동의 목적과 기능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결의,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.
5.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위원회는 매년 회합한다. 회합은 직접 대면 또는 당사국들이 이용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.
6.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보고한다.

---

<sup>5</sup> 당사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, 분쟁 사안은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.

#### 제 4.14 조 기술적 협의

1.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장 및 제 3 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요청 당사국이 제공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협의를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.
2. 제 1 항의 목적상, 한쪽 당사국의 협의 요청은 접촉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며,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요청의 접수를 확인한다. 당사국들은 이메일이나 당사국들에게 편리한 매체로 그 사안을 협의할 수 있으며, 그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.
3. 그러한 협의회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,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 4.13 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검토를 위하여 회부할 수 있다.